

축산업자조금법(안)

◇…본회는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말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축산업자조금법(안)을 성안하고, 축산관련 기관과 단체, 학계, 양축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번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했다. 본고는 본회 등이 성안한 축산업자조금법(안) 전문이다. 편집자 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업자조금을 설치·운영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라 함은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및 그 생산물과 각 그 가공품을 말한다.
3.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축산물수입업자”라 함은 축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조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금을 말한다.
6. “업종별 축산단체”라 함은 각 업종을 대표하는 업종별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7. “축산물처리장”이라 함은 도축장, 도계장, 원유 및 계란처리장을 말한다.
8. “소비촉진활동”이라 함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조사연구”라 함은 축산물에 대한 통계, 생산성 및 품질향상, 시장성 및 상품성 향상, 유통구조 개선, 이미지 개선, 영양 평가분석 등을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육”이라 함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축산업자, 축산물 수입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11. “정보제공”이라 함은 축산업 및 축산물 소비촉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2. “수급조절”이라 함은 축산물의 가격보장을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자조금의 설치) 정부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활동,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신제품개발 등을 통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축산단체 내에 자조금을 설치한다.

제4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축산업자가 납입하는 거출금
2. 축산물 수입업자가 납입하는 거출금
3. 축산물처리장에 축산물의 처리를 의뢰하는 자가 납입하는 거출금
4. 정부 보조금
5.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협찬금 등 기타 수입

제5조(거출금) ① 축산업자와 축산물수입업자는 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거출금은 축산업자는 축산물처리장 또는 배합사료공장에서, 축산물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각 거출한다.

③ 자조금의 거출업무는 축산물처리장 및 배합사료공장, 신용장 개설은행의 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당월 거출된 자조금은 익월 10일까지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거출대상 및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거출금의 산정기준) ① 축산업자의 경우 축종별 국내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축산물수입업자의 경우 수입품종별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각 거출한다.

② 국내축산업의 불황 등 특수한 경우에는 업종별 축산단체의 결의에 의하여 거출금을 조정할 수 있다. 거출금의 조정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축산업자의 경우 국내시장가격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거출금 산정의 기준시점, 거출비율, 거출금의 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조금의 운용·관리

제7조(자조금의 관리기관 등) ① 자조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업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업종별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은 업종별 축산단체가 이를 집행한다.

③ 자조금의 거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업종별 자조금총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자조금의 운용) ①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물의 소비촉진사업
2. 조사연구사업
3.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4. 신제품개발사업
5. 정책개발사업
6. 방역위생사업
7. 수급조절사업

8. 기타 자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각 사업별 자조금의 운용은 자조금의 입법취지에 따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반환청구) ① 자조금의 운용이 자조금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될 경우 축산업자는 거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거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반환청구를 하는 자는 반환청구시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반환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경우 반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 반환청구의 요건, 반환청구절차, 반환청구시 관련증거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농림부장관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자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업종별 축산단체의 자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자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조금관리위원회

제11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자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의 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정수의 과반수는 축산업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은 축산업자, 축산물 수입업자, 학자, 공무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업종별 축산단체의 추천으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④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임자의 궐위로 인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경비는 자조금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5조(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수립
2. 사업집행에 관한 감사
3.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각종 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자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
5. 자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서류 기록의 비치

② 위원회는 사업의 종류, 시행기간, 사업비, 재원 조달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업종별 축산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은 정기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수립
2. 사업집행에 관한 감사
3.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각종 규약의 제정 및 개정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긴급 의결사항에 관하여 우편, 전보, 전화 투표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의 경과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모든 위원과 업종별 축산단체장,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

제17조(과태료) ① 제5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과태료의 징수대상, 징수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이 공포된 후에도 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업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 **양론**